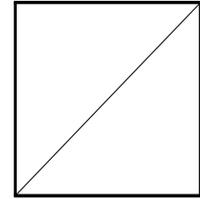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4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1. 26. (임시 제1차)

의
결
사
항

삼성중공업(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도 규 상
제출 연월일	2021. 1. 26.

1. 의결주문

삼성중공업(주)의 제42기(2015.1.1.~2015.12.31.)부터 제44기(2017.1.1.~2017.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별지1** 및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삼성중공업(주)의 제42기(2015.1.1.~2015.12.31.)부터 제44기(2017.1.1.~2017.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삼성중공업(주)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자보수충당부채 계정분류 오류 [’15년 277,708백만원, ’16년 295,591백만원, ’17년 310,390백만원]○ 총예정원가 추정오류에 의한 매출 매출원가 등 과대(과소) 계상 [’15년 42,587백만원, ’16년 67,823백만원, ’17년 68,270백만원]
조치 내용 <small>*1,*2,*3</small> (과실Ⅳ)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의○ 시정요구*4○ 내부통제 개선 권고*5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보다 높으므로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를 적용

*2 동기판단: 과실(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해당사항 없음

*4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공시하지 않아 시정 요구

*5 내부통제 개선 권고: 회사에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① 강제단가 추정 프로세스 개선 ② 경영계획 이후 12월말까지의 주요자재에 대한 발주실적 점검 및 불필요 판단 자재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③ 종합원가 파트 및 결산 파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

나. OO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지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보수충당부채 계정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5년 277,708백만원, ’16년 295,591백만원, ’17년 310,390백만원] ○ 총예정원가 추정 관련 감사절차 소홀 [’15년 42,587백만원, ’16년 67,823백만원, ’17년 68,270백만원]
조치 내용 <small>*1,*2,*3</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회계법인(과실 IV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 ○ 공인회계사 OOO(과실 V→감경시 최소*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년 주책임자, 담당이사] - 조치 없음 ○ 공인회계사 OOO(과실 IV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17년 주책임자, 담당이사] - 주의 ○ 공인회계사 OOO(과실 IV→V 단계*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17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주의 ○ 공인회계사 OOO(과실 V→감경시 최소*5)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16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조치 없음

*1 위반행위 발생당시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수준이 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조치 수준보다 높으므로 현행 양정기준에 따른 조치를 적용

*2 동기판단: 과실(현행 양정기준에 의한 동기판단)

*3 기본조치의 가중 및 감경: 해당사항 없음

*4 금융위 위원장으로부터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16년도 표창을 받아, 표창에 따른 감경을 적용[舊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VI.3.나.2)]

*5 보조책임자이므로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1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 [舊양정기준 VII.2., 新양정기준 VII.2.]

4. 참고사항

가. 제1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021.1.14.)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붙임1)

(별지1)

삼성중공업(주)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삼성중공업(주)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 000 000 000000000 00

2. 조치내용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등에 의하여

- 삼성중공업(주)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조치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삼성중공업(주)에 대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① 강제단가 추정 프로세스 개선 ② 경영계획 이후 12월말까지의 주요자재에 대한 발주실적 점검 및 불필요 판단 자재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③ 종합원가 파트 및 결산파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 내부통제 개선을 권고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삼성중공업(이하 '회사')는 제42기(2015.1.1.~2015.12.31.)부터 제44기(2017.1.1.~2017.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하자보수충당부채 계정분류 오류[‘15년 277,708백만원, ‘16년 295,592백만원, ‘17년 310,390백만원]
 - 회사는 제42기(2015.1.1.~2015.12.31.)부터 제44기(2017.1.1.~2017.12.31.)까지의 연결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 예상하자보수원가를 공사진행률에 따라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상하자보수액을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와 상계·합산 처리하여 ‘15년부터 ‘17년까지 미청구공사를 과소계상하고 초과청구공사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총예정원가 추정오류에 의한 매출·매출원가 등 과대(과소) 계상[‘15년 42,587백만원, ‘16년 67,823백만원, ‘17년 68,270백만원]
 - (강제단가 합의가 미반영) 회사는 제44기(2017.1.1.~2017.12.31.)의 연결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17년말 결산시 강제단가 합의가 추이, 경영계획 이후 구매실적, 구매부서의 자체 상승 전망자료 등에 의하면 강제단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강제단가 하락을 기초로 작성된 총예정원가를 사용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17년 19,141백만원)
 - (자재 발주실적 등 변경사항 미반영) 회사는 제42기(2015.1.1.~2015.12.31.)부터 제44기(2017.1.1.~2017.12.31.)까지의 연결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총예정원가를 확정된 이후 9~12월까지의 일부 주요 자재의 발주실적 변동 등 총예정원가의 변경요인이 있었음에도, 상기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공사 진행률을 산정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15년 42,587백만원, ‘16년 54,881백만원, ‘17년 49,129백만원)
 - (공사손실충당부채 미반영) 회사는 제43기(2016.1.1.~2016.12.31.)의 연결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예상손실을 공사손실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 ‘16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16년 12,942백만원)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15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1년 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② 임원의 해임권고, ③ 3년 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④ 경고 또는 주의, ⑤ 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제2019-13호, 2019.4.3.>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4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 등
 - 상장법인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문단 22, 43, 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32 등
 - 예상하자보수원가는 누적발생원가에 포함되고 누적발생원가는 미청구공사(또는 초과청구공사)의 총액을 구성하며, 하자보수충당부채 표시 관련 추가적인 상계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하자보수 관련 원가는 별도의 충당부채로 표시하여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문단 22, 29, 36 등
 -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며 계약의 진행에 따라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치를 수정하여야 함
 - 총계약원가(총예정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

(별지2)

OO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OO 회계법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OO회계법인

- 대표이사 : 000
-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000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본점 소재지 : 00000 000 0000 000

공인회계사 000 [‘16~‘17년 주책임자, 담당이사]

- 생년월일 : ‘0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
- 주 소 : 000 000 0000 00000000 0000 00000

공인회계사 000 [‘15~‘17년 보조책임자, 계정담당자]

- 생년월일 : ‘00.00.00.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00000
- 주 소 : 00000 000 000 000 0000000 0000 0000

2. 조치내용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의하여

- OO회계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의하여

- 공인회계사 000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공인회계사 000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00회계법인(이하 '감사인')은 삼성중공업(주)(이하 '회사')의 제42기(2015.1.1.~2015.12.31.)부터 제44기(2017.1.1.~2017.12.31.)까지의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함

- 하자보수충당부채 계정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5년 277,708백만원, '16년 295,592백만원, '17년 310,390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가 예상하자보수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미청구공사(또는 초과청구공사)와 상계·합산 처리하여 미청구공사(또는 초과청구공사)를 과대(과소) 계상하였음에도,
 - 하자보수충당부채 표시와 관련한 건설계약 회계정책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총예정원가 추정 관련 감사절차 소홀['15년 42,587백만원, '16년 67,823백만원, '17년 68,270백만원]
 - (강제단가 합의가 미반영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미발주단가를 하락 전망하여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될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미발주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17년 19,141백만원)
 - (자재 발주실적 등 변경사항 미반영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가 자재 발주실적 등 총예정원가의 변경 내역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4분기 결산자료상 재료비 발주실적을 3분기 또는 경영계획상 내역과 비교·검토하거나 9~12월까지의 주요 자재 발주실적 점검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15년 42,587백만원, '16년 54,881백만원, '17년 49,129백만원)

- (공사손실충당부채 미반영 관련 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은 회사가 예상손실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될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감사조서 『진행매출 체크리스트』의 지시사항에 따라 신규 계약이 정당한 승인권자에 의해 검토·승인되었는지 확인하면서, 경영진이 견적원가나 총예정원가를 승인·결재한 문서 확인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 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16년 12,942백만원)

나. 근거법규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감사기준」 200, 500

- 상기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 증선위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감사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정제외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감사인 지정시 참작할 수 있음

□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5조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감사반의 등록취소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③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④ 경고 또는 주의, ⑤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舊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공인회계사에 대한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처분건의 할 수 있으며, ②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④ 20시간 이내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회계감사기준」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 감사인은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관 련 법 규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나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①~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제14조의2(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② 삭제<1996.12.30>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조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4.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략)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4.~5. (생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생략)

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⑦ (생략)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 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괴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4. (생략)

② (생략)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5.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해당 회사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사실을 해당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감사인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 나.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포함한다)가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2.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주권상장법인
 - 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다.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 라.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특정 회사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⑦ (생략)

[별표1] 감사인에 대한 조치사유(제29조제3항 관련)

1.~6. <생략>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8.~20. (생략)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②~③ (생략)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조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법·이 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규정이나 명령 등에 따라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별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5. (생략)

③~⑦ (생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리(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를 말한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심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가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심사하는 업무

2.~14. (생략)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17.~21. (생략)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로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⑥ (생략)

⑦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금융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 검찰 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4. 회사관계자·감사관계자·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가.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나.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 감사반의 등록취소
 2. 삭제<2005.6.29>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 ②~③ 삭제<2005.6.29>

제54조(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2.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 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경고 또는 주의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 ②~③ (생략)

제55조(회사에 대한 조치) 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년 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 해임권고

3. 3년 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4. 경고 또는 주의
 5.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 ② (생략)

제57조(조치기준) 증선위가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금액의 크기 등 중요도, 고의성의 유무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조치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때에는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조치의 가감 및 병과등) ①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감리결과(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결과 포함) 조치를 받고,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 ② 제53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③ 삭제<2000.12.8>
- ④ 증선위는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질적 특성 및 발생원인·결과·방법 등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60조(사전통지) ① 증선위(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부과의 조치인 경우에는 금융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조치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회사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의 경우에는 그 임원, 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치의 제목
 2. 조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조치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60조의2(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증선위가 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기 전에 증선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당사자 등이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조치의 수준,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 가. 등록취소
 - 나. 1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감사인이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를 한도로 한다)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
 - 가. 등록취소
 - 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공인회계사가 조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 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 나. 주권상장법인
 - 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 연간 20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실시의무 부과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감사를 담당했던 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주책임자의 감사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이하 이 조에서 "담당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다만,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를 구별하여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 또는 1년 이상의 전부 직무정지를 내리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

2. 주책임자에 법 제2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 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공인회계사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감리 또는 감사인 감리를 한 결과 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하 이 조에서 "벌칙부과 대상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 또는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제반 정황으로 보아 벌칙 부과 대상행위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가고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의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재무제표 심사(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조사자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에 대한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경고
2. 주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④ 금융감독원장은 별표 7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양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치등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리집행기관은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조사자가 사망한 경우
2. 회사가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조치등 대상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회사가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조치등이 불가능한 경우

4. 위법행위의 중요도가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적인 법령등 위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되는 경우

제31조(사전통지) ① 감리집행기관(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은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피조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조치등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판단근거를 포함한다)
 - 나. 조치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
 - 다. 조치등의 내용(감리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에 감리집행기관이 기재할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및 적용기준(위반동기 등을 포함한다)
 - 라. 조치등에 관한 증거자료 목록. 다만, 조치등에 검찰총장예의 고발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 및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제32조(당사자등의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리집행기관이 조치등을 하기 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감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등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조치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리집행기관은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 피조사자에게 조치등의 내용, 사유 및 조치등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검찰에 고발등을 하는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는 조치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알려야 하는 기한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연기사유, 새로운 처리기한 등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당사자등에게 알린 이후에 당사자등은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추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8조(위법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감리등에 따른 조치등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 및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치등의 일시
2. 조치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조치등의 내용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14. (생략)

부칙<제2019-13호>

제2조(조치등에 관한 적용례) 2019년 4월 1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1일 전부개정되기 전의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33호)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을 적용하는 것이 피조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위반동기

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란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는 고의가 있다고 본다. 다만, 피조사자가 고의가 없음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 및 임직원

- 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 또는 누락시켜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나) 회계장부, 전표(傳票)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다)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위법행위가 회사, 주주 또는 임직원(「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1)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2)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 거래와 관련되는 경우
 - (3)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채무감면 등과 관련되는 경우
 - (4)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수정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없거나, 상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2)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묵인하거나 회사와 공모(共謀)하여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한 경우
- 나) 위법행위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가.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은 중요성 금액 대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다만,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한다.

나. 중요성 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요성 금액을 정한다.

1) 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그 밖의 재무성과

2) 그 밖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3. 조치등의 가중·감경

가. 가중사유

1)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법령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

3) 공인회계사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다만, 경고 이하의 조치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4) 위반기간이 3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고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위법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 1)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규모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규모가 1,000 억원 미만인 경우(단, 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대형비상장주식 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2) 감사인 감리 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회사 또는 감사인이 위법행위와 직접 관련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에게 고지한 경우
 - 5)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통지받기 전(감리집행기관이 감리등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지한 날 이전)에 자진하여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하거나 수정공시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시자료를 통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알린 경우
 - 6)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자진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수정공시한 경우. 다만, 수정공시한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감리집행기관의 재무제표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적된 사항
 - 나) 회사가 감리집행기관이 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최초로 받은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감리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
 - 7) 공인회계사가 조차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장관급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동일한 공적에 의한 감경은 1회에 한하며, 검찰총장예의 고발 등, 금융위원회예의 등록취소·전부 직무정지가 건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9) 그 밖에 위반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조치등의 병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집행기관은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5. 회계처리기준 위반 외 법령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행위의 원인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치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제25조(감리결과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규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조치안 작성) 규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선위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제25조의3(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53조 내지 제55조의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25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선위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조치자의 진술거부의사 표명·피조치자의 행방 불명 등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③ 증선위 조치안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선위 개최 전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8조(심사, 감리결과 처리) ① 감독원장은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품질관리감리결과 개선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 서식)을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다.

② 심사담당부서장은 심사결과 규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보고 및 처리안(별지 제33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감리·조사결과 조치의 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조치안 작성) 제38조에 의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은 부의안 형식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의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조치안을 기재한다.

제40조(사전통지) ① 감독원장은 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제38조의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규정 제2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예정일 10일 전까지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의 종류를 기재한 조치사전통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조치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서면에 의한 방법
2.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금융위원회, 증권

선물위원회의 조치의 경우)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④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이 사전통지 내용과 달라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전(증권선물위원회 조치안의 경우), 감독원장의 조치 전(감독원장 조치의 경우)에 조치안, 감독원장이 조치하려는 내용에 맞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별도로 송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②~④ (생략)

⑤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매출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경우
4.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제123조 또는 제124조를 위반한 경우
5.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의한 증권의 모집·매출,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제1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⑦ (생략)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거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및 제180조부터 제180조의3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⑧ (생략)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① 제428조 및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업무정지기간(제42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7. (생략)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생략)

②~③ (생략)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2. (생략)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나.~다. (생략)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마.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이하 생략)

제448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집합투자증권 및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회사의 개요

나. 사업의 내용

다. 재무에 관한 사항

-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바. 주주에 관한 사항
- 사.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자.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④ (생략)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생략)

② 법 제1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1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9조제7항에 따른 대표이사과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제169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명
2. 회사의 개요
3.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 주주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임직원과의 거래내용
7.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8.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9. 그 밖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⑥ (생략)

제170조(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8조제3항제7호 중 부속명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2. (생략)

② (생략)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3. (생략)
- ② (생략)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

제6조(조사의 실시 등) 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2.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이첩받은 경우
 3. 각 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거나 그 밖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 위법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5. 기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③ (생략)

제19조(조사결과 처리) ①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26조제5항 및 시행령 제3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4조(고발등)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3. (생략)

[별표 제3호]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1.~4. (생략)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다. (생략)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따른 조치 기준에 의한다.

6.~8. (생략)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재무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감사결과 수정된 재무제표(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을 제외한다)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용어는 외감법 제13조에 따라 정한 회계 처리기준(이하 “국내 회계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③~⑫ (생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상계

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33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계표시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16 계약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 (1)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 (2)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서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
- (3)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원가

17 특정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현장감독을 포함한 현장인력의 노무원가
- (2) 건설에 사용된 재료원가

- (3) 계약에 사용된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 (4) 생산설비, 건설장비 및 재료를 현장으로 운반하거나 현장에서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 (5)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임차원가
- (6) 계약과 직접 관련된 설계와 기술지원원가
- (7) 예상하자보수원가를 포함한 복구 및 보증공사의 추정원가
- (8) 제3자의 보상금 청구

이러한 원가는 계약수익에 포함되지 않은 부수적 이익만큼 차감될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 이익의 예로 잉여자재를 판매하거나 계약종료시점에 생산설비와 건설장비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들 수 있다.

- 19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원가에는 계약조건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부 일반관리원가와 개발원가를 포함할 수 있다.
- 21 계약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한다. 그러나 계약에 직접 관련되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원가는,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약원가의 일부로 포함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후속기간에 체결되더라도 계약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 22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문단 36에 따라 관련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 23 정액계약의 경우에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1) 총계약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 (3) 계약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계약원가와 보고기간말 현재의 계약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4) 특정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계약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 실제 발생한 계약원가를 이전 추정치와 비교할 수 있다.
- 25 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진행기준이라고 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계약수익은 특정 진행률에 도달하기까지 발생한 계약원가에 대응되며, 그 결과로 공사진행률에 비례하여 수익, 비용 및 이익이 보고된다. 이 방법은 특정 기간의 계약활동과 성과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26 진행기준하에서 계약수익은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계약원가도 통상적으로 관련 공사가 수행된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당해 계약의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해 초과액은 문단 36에 따라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 27 계약상의 미래 활동과 관련된 계약원가가 미리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약원가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원가는 발주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할 금액을 의미하며 흔히 미성공사로 분류한다.

- 28 건설계약의 결과는 그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기손익에 계약수익으로 이미 인식한 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발생한 경우,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은 계약수익을 조정하기 보다는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 29 일반적으로 계약이 합의된 이후에 신뢰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다음 사항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 (1) 건설대상 자산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구속력 있는 권리
 - (2) 교환 대가
 - (3) 결제의 방법과 조건
- 또한, 건설사업자는 효과적인 내부 재무예산 및 보고체제를 갖추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 건설사업자는 계약의 진행에 따라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치를 수정한다. 추정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30 계약의 진행률은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 건설사업자는 수행한 공사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 (1)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
 - (2) 수행한 공사의 측량
 - (3) 계약 공사의 물리적 완성비율
- 발주자에게서 수령한 기성금과 선수금은 흔히 수행한 공사의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
- 31 진행률을 누적발생계약원가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는 계약원가만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한다. 진행률 산정을 위한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현장에 인도되었거나 계약상 사용을 위해 준비되었지만 아직 계약공사를 위해 설치, 사용 또는 적용이 되지 않은 재료의 원가와 같은 계약상 미래 활동과 관련된 계약원가. 단, 재료가 계약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
 - (2)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 34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계약원가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발생한 계약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충분한 구속력이 없는 계약. 즉, 계약의 유효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경우
 - (2) 계약이행의 완료가 계류 중인 소송이나 입법의 결과에 좌우되는 계약
 - (3) 수용되거나 몰수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과 관련한 계약
 - (4) 발주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계약
 - (5) 건설사업자가 계약 이행을 완료할 수 없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계약
- 36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 37 예상손실은 다음 사항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 (1) 당해 계약의 공사가 시작되었는지의 여부
 - (2) 계약활동의 진행정도
 - (3) 문단 9에 따라 단일건설계약으로 취급되지 않은 다른 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금액

38 진행기준은 매 회계기간마다 누적기준으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현행 추정치에 적용한다. 따라서 계약수익이나 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의 효과나 계약결과의 추정치 변경의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참조). 변경된 추정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후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수익과 비용의 금액 결정에 사용한다.

39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 (1) 당기에 수익으로 인식한 계약수익금액
- (2) 당기에 인식한 계약수익의 결정방법
- (3) 계약 진행률의 결정방법

40 보고기간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누적발생원가와 누적손익의 합계액
- (2) 선수금
- (3) 회수보류액

42 재무제표에는 다음을 표시한다.

- (1) 미청구공사 총액은 자산으로 표시한다.
- (2)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부채로 표시한다.

43 미청구공사 총액은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 청구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다음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1)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
- (2)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44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다음 (2)에서 (1)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1)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
- (2)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

4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을 공시한다. 우발부채, 우발자산은 하자보수원가, 보상금, 위약금 또는 잠재적 손실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5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특정 종류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한다.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당부채의 일부 종류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1) 건설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참조)

- (2) 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참조)
- (3)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참조). 다만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 운용리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해당 기준서에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4) 종업원급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 (5)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참조).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의 의무와 권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 보험자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 (6)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참조)

10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의제의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행위에 따라 생기는 의무

- (1)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표명함
- (2) 위 (1)의 결과로 기업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함

13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 (1) 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 (2) 우발부채는 다음의 (가)나 (나)의 이유로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 (가) 기업이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현재의무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의무이다.
 - (나) 현재의무이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기준서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14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 (1)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 (3)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

16 대부분의 경우에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하는지는 분명하다. 드물지만 진행 중인 소송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또는 해당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생겼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증거(예: 전문가의 의견)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이 때 보고기간후사건이 제공하는 추가 증거도 고려한다. 고려한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2)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remote) 않다면 우발부채를 공시한다(문단 86 참조).

□ 100 총칙

1. (목적) 이 회계감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외감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감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리와 주요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 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2. (감사의 일반원리)

- 2.3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범위) 이 기준에 준거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사인은 이 기준, 관련 법규 및 감사계약조건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 240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1. (목적)

- 1.3 감사인은 감사를 계획·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보고할 때 재무제표가 부정과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의 책임)

- 2.1 (감사계획과 토의) 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 시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따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가능성에 대하여 당해 감사에 참여하는 감사팀 구성원들과 토의하여야 한다.
- 2.2 (경영자에 대한 질문) 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 시 경영자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
 - (1) 부정과 관련된 사항
 - ① 부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에 대한 경영자 자신의 평가 결과
 - ② 동 위험의 예방과 적발을 위하여 경영자가 구축한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
 - (2) 오류의 예방과 적발을 위하여 운영 중인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경영자의 이해 수준
 - (3) 회사에 영향을 미친 부정이나 현재 조사 중인 부정의혹으로서 경영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
 - (4) 회계상의 중요한 오류를 경영자가 발견한 경우 그 내용
- 2.3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감사인은 이 기준 “400 감사위험의 평가와 내부통제”에 따라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평가함에 있어서, 부정과 오류의 결과로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고려함에 있어서, 감사인은 의도적인 재무보고의 왜곡 또는 자산의 유용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정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 2.4 (적발위험) 감사인은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감사위험 즉, 부정과 오류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왜곡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발하지 못할 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입증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입증절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감사인은 감사인이 그 존재를 확인한 바 있는 각각의 부정위험요소를 감안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감사절차)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실제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견과 부정위험의 고려) 재무제표 왜곡표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왜곡표시가 부정과 관련된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부정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감사의 다른 측면, 특히 경영자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이 없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5.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평가 및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사인은 이로 인하여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500 감사증거

1. (목적)

- 1.2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 감사인은 실물자산이나 문서의 검사, 관찰, 질문과 조회, 계산 및 분석적 절차 등 하나 이상의 절차를 적용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적용하는 시기는 수집하고자 하는 감사증거의 입수가능기간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 520 분석적 절차

1. (목적)

- 1.2 감사인은 감사의 계획단계 및 감사의 종결단계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할 때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분석적 절차는 감사과정의 다른 단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2. (감사계획 단계에서의 분석적 절차) 감사인은 감사의 계획단계에서 회사의 사업을 이해하고

잠재적인 위험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종결단계에서의 전반적 검토를 위한 분석적 절차) 감사인은 감사의 종결단계에서 재무제표가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감사인이 파악한 내용과 전체적으로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분석적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비정상적 항목의 조사) 분석적 절차를 수행한 결과 다른 관련정보와 모순되는 경우 또는 예측치와 편차가 있는 유의적인 변동이나 연관성을 파악한 경우 감사인은 이를 조사하여 그 합리적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540 회계추정치(accounting estimates)에 대한 감사

2. (감사증거)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3. (감사절차)
 - 3.1 감사인은 회계추정치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적절하게 공시되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 3.2 회계추정치를 감사함에 있어서 감사인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경영자의 추정절차에 대한 검토 및 시사
 - (2) 경영자의 추정치와 독립적인 추정치와 비교
 - (3)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을 검토하여 회계추정치의 타당성을 확인
4. (감사절차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감사인은 회계추정치가 회사의 사업에 대하여 감사인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또한 감사과정에서 수집한 타 감사증거와 모순이 없는지 최종적 평가를 하여야 한다.

회계감사기준

□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시행일

10. 이 감사기준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한다.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11.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음. 감사인은 이에 따라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b) 감사인의 발견사항에 근거하여 감사기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하고 커뮤니케이션함

전문가적 의구심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와 감사위험

17. 감사인은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책임

5.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합리적 확신을 얻을 책임이 있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도 감사의 고유한계에 의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중 일부가 발견되지 못할 불가피한 위험이 존재한다.

시행일

9. 이 감사기준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한다.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25.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감사인은 재무제표 수준과, 거래유형, 계정과목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의 수준에서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응한 감사절차

30. 감사기준서 330에 따라, 감사인은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평가내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증거의 평가

35. 감사인은 왜곡표시를 식별한 경우 그러한 왜곡표시가 부정의 징후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으면 감사인은 특정의 부정사태가 고립되어 발생한 사건이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감사의 다른 측면, 특히 경영자진술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해당 왜곡표시가 미치는 시사점을 평가하여야 한다.

□ 감사기준서 315 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시행일

2. 이 감사기준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한다.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6. 위험평가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경영진, 그리고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내부의 관련자에 대한 질문(문단 A6 참조)
- (b) 분석적 절차(문단A7-A10 참조)
- (c) 관찰과 검사(문단 A11 참조)

관찰과 검사(문단 6(c) 참조)

A11. 관찰과 검사는 경영진 등에 대한 질문으로 뒷받침할 수 있으며, 기업 및 기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감사절차에는 예를 들어 다음 사항에 대한 관찰이나 검사가 포함된다.

- 기업의 영업
- 문서(사업계획과 사업전략 등), 기록 및 내부통제매뉴얼
- 경영진이 작성한 보고서(분기경영보고서, 중간재무제표 등)와 지배기구가 작성한 보고서(이사회 의사록 등)
- 기업의 건물과 대지, 공장설비

경영진주장의 이용

A111. 감사인이 여러 가지 발생가능한 잠재적인 왜곡표시의 유형들을 고려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영진주장은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 (a) 감사대상기간의 거래 및 사건의 유형에 대한 경영진주장
 - (i) 발생사실 - 기록된 거래와 사건은 발생되었고 기업에 귀속됨
 - (ii) 완전성 - 기록되어야 하는 모든 거래와 사건은 기록되었음
 - (iii) 정확성 - 기록된 거래와 사건에 관련된 금액 및 기타 데이터는 적합하게 기록되었음
 - (iv) 기간귀속 - 거래와 사건은 해당 보고기간에 기록되었음
 - (v) 분류 - 거래와 사건은 적절한 계정으로 기록되었음
- (b) 보고기간말 계정잔액에 대한 경영진주장
 - (i) 실재성 - 자산, 부채 및 주주지분은 실재함
 - (ii) 권리와 의무 - 기업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으며 부채는 기업의 의무임
 - (iii) 완전성 - 기록되어야 하는 자산, 부채 및 주주지분은 모두 기록되었음
 - (iv) 평가와 배분 - 자산, 부채 및 주주지분은 적합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으며, 평가나 배분의 결과는 적합하게 기록되어 있음
- (c) 표시와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 (i) 발생사실과 권리와 의무 - 공시된 사건, 거래와 기타사항들은 발생되었으며 기업에 귀속됨
 - (ii) 완전성 -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시들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iii) 분류와 이해가능성 - 재무정보는 적절하게 표시되고 기술되어 있으며, 공시들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음
 - (iv) 정확성과 평가 - 재무정보 및 기타의 정보는 공정하게 그리고 적합한 금액으로 공시되어 있음

경영진주장과 통제의 연결(문단 26(c) 참조)

A117. 반대로, 어떤 통제활동은 특정 거래유형이나 계정잔액에 내재된 개별적 경영진 주장에 대해서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연말 재고자산의 실사 시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록하도록 설정한 통제활동은 재고자산 계

정잔액의 실재성과 완전성이라는 경영진주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 감사기준서 330 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시행일

2. 이 감사기준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한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평가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감사절차

7. 감사인은 수행될 추가감사절차를 설계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a)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평가 이유를 고려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i) 관련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즉, 고유위험)
 - (ii) 위험평가에 관련 통제를 고려하였는지(즉, 통제위험), 이 결과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즉, 감사인은 실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할 때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의존할 것인지 여부)
 - (b) 감사인은 위험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감사기준서 500 감사증거

시행일

3. 이 감사기준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한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6.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문단 A1-A25 참조)

감사증거로 사용되는 정보

7.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할 때,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문단 A26-A33 참조)

9. 감사인은 기업이 생산한 정보를 이용할 때, 해당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의 필요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a)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함(문단 A49-A50 참조)
- (b) 정보가 감사인의 목적을 위해 충분히 명확하고 자세한지 여부를 평가함(문단 A51 참조)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테스트 항목의 추출

10. 감사인은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를 설계할 때, 테스트 항목의 추출과 관련하여 해당 감사절차의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문단 A52-A56 참조)

감사증거의 일관성 결여 또는 신뢰성에 대한 의문

11. 어떤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가 다른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감사인이 감사 증거로 이용되는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절차에 어떠한 변경이나 추가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감사의 다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문단 A57 참조)

□ 감사기준서 520 분석적절차

시행일

2. 이 감사기준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한다.

분석적절차의 결과에 대한 조사

7. 이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된 분석적절차의 결과, 감사인이 다른 관련정보와 불일치하거나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식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야 한다.
- (a) 경영진에게 질문하고 경영진의 답변과 관련성이 있는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함
 - (b) 그러한 상황에 필요한 기타의 감사절차를 수행함(문단 A20-A21 참조)

□ 감사기준서 54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

시행일

5. 이 감사기준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한다.

목적

6. 이 감사기준서와 관련된 감사인의 목적은 다음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것이다.
- (a) 공정가치 회계추정치 등 재무제표에 인식되거나 공시된 회계추정치가 합리적인지 여부
 - (b)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들은 적절한지 여부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의 식별과 평가

10. 감사기준서 315에 따라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때,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추정불확실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문단 A45-A46 참조)
11. 감사인은 그 추정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가 유의적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문단 A47-A51 참조)

평가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12.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기초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문단 A52 참조)
- (a) 경영진이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적합하게 적용했는지 여부(문단 A53-A56 참조)
 - (b) 회계추정치의 도출방법이 적합하며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는지 여부, 그리고 회계추정치와 이의 도출방법이 전기와 다르게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이 해당 상황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문단 A57-A58 참조)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의 요구에 따라 평가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할 때 회계 추정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절차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야 한다.(문단 A59-A61 참조)
- (a)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이 회계추정치에 관한 감사증거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문단 A62-A67 참조)
 - (b)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과 그러한 추정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테스트함. 이 과정에서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문단 A68-A70 참조)
 - (i) 이용된 측정방법이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문단 A71-A76 참조)
 - (ii) 경영진이 적용한 가정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측정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문단 A77-A83 참조)
 - (c) 적합한 실증절차와 함께,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에 대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을 테스트함(문단 A84-A86 참조)
 - (d) 경영진의 점추정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를 도출함. 감사인은 이를 위해 다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문단 A87-A91 참조)
 - (i) 만약 감사인이 경영진과 다른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점추정치 또는 범위추정치가 관련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이고 또 이것이 경영진의 점추정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평가하는 데 충분하도록 경영진의 가정이나 추정방법을 이해함(문단 A92 참조)
 - (ii) 만약 감사인이 범위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하여 범위추정치 내의 모든 결과들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질 때까지 동 범위추정치를 좁힘(문단 A93-A95 참조)

유의적 위험에 대응한 후속실증절차

추정불확실성

15.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330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한 실증절차들에 추가하여, 유의적 위험을 초래하는 회계추정치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문단 A102 참조)
- (a) 경영진이 대체적인 가정이나 결과를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나 결과를 왜 기각하였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의 추정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관한 사항(문단 A103-A106 참조)
 - (b) 경영진이 이용한 유의적 가정들이 합리적인지 여부(문단 A107-A109 참조)
 - (c) 경영진이 이용한 유의적 가정들이 합리적인지 또는 해당 재무보고체계를 적합하게 적용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특정한 일련의 행동을 수행하려는 경영진의 의도 및 이를 수행할 능력(문단 A110 참조)
16. 감사인은 만약 경영진이 유의적 위험이 유발되는 회계추정치의 추정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면,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경우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범위추정치를 도출하여야 한다.(문단 A111-A112 참조)

인식 및 측정 기준

17. 감사인은 유의적 위험이 유발되는 회계추정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이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 (a) 재무제표에 회계추정치를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기로 한 경영진의 결정(문단 A113-A114 참조)
 - (b) 해당 회계추정치를 위하여 선택한 측정기준(문단 A115 참조)

회계추정치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평가 및 왜곡표시의 결정

18. 감사인은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문단 A116-A119 참조)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공시

19. 감사인은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재무제표의 공시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문단 A120-A121 참조)

서면진술

22. 감사인은 경영진(적절한 경우 지배기구 포함)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적용한 유의적 가정들이 합리적이라고 믿는지 여부에 대해 이들로부터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문단 A126-A127 참조)

문서화

23.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a) 유의적 위험이 유발되는 회계추정치 및 그 공시의 합리성에 대한 감사인 결론의 근거
- (b)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에 대한 징후들(문단 A128 참조)

경영진이 회계추정치의 필요성을 어떻게 식별하는지에 대한 이해(문단 8(b) 참조)

A18. 감사인이 위험평가절차를 통해 얻은 기업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는 감사 중에 입수한 다른 감사증거와 더불어 감사인이 회계추정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나 상황의 변화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A19.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질문할 때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이 회계추정치 도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했는지 여부
- 회계추정치 도출을 발생시켰던 거래조건이 새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이 변경되어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회계정책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수정하여 하거나 새로운 회계추정치를 도출하여야 하는, 경영진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규제의 변경 또는 다른 사항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 새로운 회계추정치를 필요로 하거나 회계추정치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경영진의 회계추정치의 도출방법에 대한 이해(문단 8(c) 참조)

A22.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절한 내부통제 등 회계추정치 도출을 위한 재무보고절차를 수립하도록 또한 요구된다. 그러한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적합한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적합한 추정이나 평가방법(해당 시 관련 모델 포함) 등 추정절차를 규정함
- 회계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데이터와 가정을 개발하거나 식별함
- 회계추정치 도출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치를 재추정함

A23. 감사인은 경영진의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을 이해할 때 예를 들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다.

- 회계추정치가 관련되는 계정이나 거래의 유형(예를 들어, 회계추정치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의 기록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인지, 또는 비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
- 경영진이 특정 회계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알려진 측정기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그렇다면 그 방법
- 회계추정치가 보고기간 중에 이용가능한 데이터를 근거로 도출되었는지 여부, 그렇다면 경영진이 해당 시점과 보고기간말 사이에 발생한 사건과 거래 및 상황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였는지 여부와 그 방법

모델의 이용 등 측정방법(문단 8(c)(i) 참조)

A25. 재무보고체계가 해당 상황에서 사용될 특정의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감사인은 회계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또는 해당 시 적용 모델)을 이해할 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영진이 특정의 방법을 선택할 때, 추정대상이 되는 자산이나 부채의 성격을 고려한 방법
- 기업이 특정 유형의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 사업이나 산업 또는 환경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A26. 예를 들어 경영진이 회계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할 모델을 내부적으로 개발하였거나 특정 산업이나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에서 벗어난 경우,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이 더 클 수 있다

평가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문단 13 참조)

A59. 감사인은 문단 13에서 기술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응 중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이를 결합하여 어떤 대응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일상적인 거래 또는 비일상적인 거래로부터 발생했는지 여부 등 회계추정치의 성격
- 감사인의 절차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 유의적 위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평가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A60. 예를 들어 대손충당금의 합리성을 평가할 때, 감사인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 절차는 다른 절차와 결합하여 후속적인 현금회수를 검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찰가능한 투입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독자적 모델에 근거한 경우와 같이, 회계추정치와 연관된 추정불확실성이 높을 때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문단 13에 제시된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들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측정방법의 평가(문단 13(b)(i) 참조)

A71.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측정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을 경우, 적용가능한 제 모델을 포함하여 이용된 방법이 해당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다.

A72.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감사인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선택된 방법에 대한 경영진의 논리적 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 해당되는 경우, 경영진은 선택한 방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규정된 기준을 충분하게 평가하고 적합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추정대상 자산이나 부채의 성격 및 회계추정치와 관련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

- 사항이 주어진 경우, 그 측정방법이 상황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기업이 속한 산업과 환경에 관련하여 그 측정방법이 적합한지 여부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문단 13(b)(ii))

A77.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는 감사인이 감사 때 이용가능한 정보에만 근거한다. 경영진의 가정을 다루는 감사절차는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감사의 관점에서 수행되는 것이며, 경영진의 가정 그 자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A78. 감사인은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이 합리적인지 평가할 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각각의 가정이 합리적인지 여부
- 가정들이 상호종속성과 내적일치성을 갖는지 여부
- 각각의 가정을 집합적으로 또는 다른 가정들과 연결하여 고려하였을 때, 해당 회계 추정치나 다른 회계추정치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이는지 여부
- 공정가치 회계추정치의 경우, 가정이 시장에서 관찰가능한 가정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A79. 회계추정치가 기초하고 있는 가정은 특정 목적과 전략의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감사인은 이때 가정이 예를 들어 다음 사항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함으로써, 그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반적인 경제환경과 해당 기업의 경제적 상황
- 기업의 계획
- 관련성이 있을 경우, 과거 보고기간에 수립되었던 가정
- 기업의 경험 또는 기업이 경험한 이전의 상황들(이러한 역사적 정보가 미래의 상황 또는 사건을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정도까지 고려한다)
-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경영진이 사용한 기타의 가정들

A80. 사용된 가정의 합리성은 특정한 일련의 행동을 수행할 경영진의 의도와 능력에 의존될 것이다. 경영진은 종종 특정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된 계획과 의도를 문서화하며, 해당 재무보고체계가 그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비록 경영진의 의도와 능력에 관해 입수할 감사증거의 범위는 전문가적인 판단사항이지만,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영진이 진술하였던 의도를 과거에 수행했던 이력을 검토함
- 해당되는 경우 공식적으로 승인된 예산이나 승인 또는 회의록 등 문서화된 계획이나 기타의 문서를 검토함
- 특정한 일련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경영진에게 질문
- 재무제표일 후 감사보고서일까지 발생한 사건을 검토함
- 현존하는 이행약속의 시사점 등 기업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일련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평가함

그러나 회계추정치를 도출할 때 경영진의 의도나 계획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재무 보고체계도 있다. 예를 들어 공정가치 회계추정치가 종종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들의 측정목적상 가정에 시장참여자가 사용한 가정들이 반영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종종 그러한 때가 있다.

서면진술(문단 22 참조)

A126. 감사기준서 580는 서면진술의 이용을 논의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인식되거나 공시된 회계 추정치에 대한 서면진술에는 추정불확실성의 성격과 중요성 및 그 정도에 따라 다음에 대한 진술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회계추정치를 결정할 때 경영진이 사용한 관련 가정과 모델 등 측정절차의 적합성 및 해당 절차의 적용에 대한 일관성
- 회계추정치 및 그 공시와 관련이 있을 경우, 가정은 기업을 대표하여 특정한 일련의 행위를 수행할 경영진의 의도와 능력을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
- 회계추정치에 관련된 공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하에서 완전하고 적합하다는 것
-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추정치와 공시에 대해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이 없다는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심사국
연 락 처	02-2100-2695	02-3145-7720